

# 문교 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홍 영 숙

(적십자간호전문대학장 · 본회중앙이사)

## I

모든 법령이 필요적 요구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에 관계된 법령은 그 목적이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고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에 있다.

1979년 전문대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정규교육 체제로 확립되고 주기능은 중급교육에 두고 부기능으로 계속 교육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간호원의 이상상을 향하여 체계적 전문직업 교육으로 앞으로의 전망은 기초교육이 의학, 약

학, 간호학이 나란히 설 날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있다.

교육은 한 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지식, 문화등을 학생에게 전수하고 가치를 형성시키는 동시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인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느냐의 문제다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노력은 제도적, 법적 조치가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때 더욱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 II

### 가) 국립간호교육기관의 확충

교육법 제3조에 의하면 “교육의 목적은 학교 기타 교육을 위한 시설에서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강력히 실현되어야 하며 공민, 과학, 실업과 사범의 교육은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 변화는 인구증가와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건강과 복지생활에 대한 행정적 강화는 의료보험제도 등으로 국민복지문제는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늘 번 헌법 개정에서 건강권 삽입등에 대한 소리는 국민의 소리가 동시에 간절한 요구인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간호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동시에 건강교육도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교육목적내에 건강내용이 삽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간호교육기관은 간호대학(4년제) 14개교, 간호전문대학(3년제) 38개교로서 합계 52개교이며 설립별 분포를 보면 국립이 9개교, 공립 16개교, 사립이 27개교로서 국립은 17%에 불과하다.

그리고 간호전문대학에서만 볼 수 있는 공립제일은 보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어 교육체제상 일원화 과정에서 석연치 않으므로 교육대학과정과 같이 국립화하여 육성함이 타당할 것이다.

### 나) 계속교육의 필요성

교육법 제9조를 보면 “모든 국민에게 그 능

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운영하도록 하고 “직업을 가진 자의 수학을 위하여 야간제, 계절제, 시간제, 기타 특수한 교육방법을 강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배우고자 하는 의욕과 자질은 있으나 여건이 충족되지 못한 자를 위하여 야간제, 계절제, 시간제 등의 특수교육 방법을 강구하여 수학의 기회를 균등히 하므로서 흥익인간의 이념아래 인격을 완성하여 국가발전과 이상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교육의 필요성을 강조, 여러 장치를 마련하여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1) 간호학교 및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원 국가고시를 합격한 자에게도 취득학과목과 학점이 인정될 때에 원하는 계열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면학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보조원자격을 취득한 자가 간호교육을 전공하고자 원해도 역시 진학할 교육기관이 없어 계속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속성과정을 마친 후 간호보조역할로서 인간생명을 다룰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진학의 길이 법적으로 규정지어져야 할 것이다.

다) 대학 편입학 제도

1) 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 1항에 의하면 “제 2학년 이상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상당 연령에 달하고 전 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라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학학생 정원령 제 2조 제 2항 제 3호에 의하면 전문대학의 공업계 학과만 우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공업전문대학(전문학교)을 졸업한 자로서 ① 대학편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이거나, ② 국가기술자격법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문교부 장관이 정하는 공업계 학과의 제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학과 당해학년 정원의 2할이내를 편입학 허가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편입학의

문호를 크게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전문대학(전문학교) 졸업생의 경우, 의료법 제 7조에 의거 국가시험을 거쳐 국가의 면허를 취득하고 있음에도 편입학의 문호가 좁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간호전문대학을 위시하여 타계열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도 이와 동등한 편입학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또한 교육법 시행령 제 74조의 2에 의하면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가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는 동계대학의 해당학과 지정고시이다. 대학의 학과 중 전문대학에 서이수한 학과의 학문 내용이 동일분야에 속한다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학과는 다음과 같다.

계열 별	전문대학학과	대학해당학과
간호계열	간호과	간호학과
보건계열	임상병리학	의학과, 한의학과 미생물학과
	방사선과	의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의학과, 한의학과 간호학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치의학과, 간호학과
	위생과	간호학과
	보건행정과	복지행정과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열학과별 내용을 보면 남독이 되지 않는다. 고시된 과목중 간호계열이 속할 수 있는 동일 분야 학과는 최소한 의학과, 한의학과, 복지행정과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고시된 계열이외에 학과의 학문적인 유사성이 인정될 때에는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호 개방의 제도적 장치가 고려되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라) 양호교사

1) 교육법 제 119조에 규정한 양호교사의 자격을 보면

- ①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
- ② 간호계학교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이수한 자

③ 간호원 면허증 소지자로서 양호교사의 자격 결정에 합격한 자로 되어 있으나 ① ②의 간호교육을 마친 자라도 반드시 간호원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간호원 면허를 취득, 불법행위가 아닌 정당한 간호행위를 할 수 있는 양호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2) ① 교육법 시행령 제38조는 “18학급 이상의 국민학교에는 양호교사를 두어야 하며 무의촌의 경우 18학급미만의 경우에도 양호교사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국민학교에서 학동에 대한 학교보전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학급수의 제한이 아닌 학교마다 학생수의 비례에 의하되 1인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규정화 함이 바람직하다.

②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및 제43조 제3항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양호교사 배치에 관한 것으로 “특수교사와 양호교사는 이를 둘 수 있다”의 임의 규정인 바, 이것 또한 학교보전의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한 것으로 학교마다 1인 이상을 두도록 의무 규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학교보전법관계에서 직원의 직무에 관한 규칙(문교부령 제266호)을 보면 학교의 연간, 월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과 학생의 보전교육지도 내용작성 및 교내의 보전교육지도 그리고 보전교육에 관한 일반교사의 지도 조연에 관한 직무를 체육(주임) 교사에게 주워지고 있으며 양호

교사는 학교보전관리계획의 수립을 보조하도록 명시하여 학교보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따라서 학교보전에 관한 직무는 당연히 양호교사에게 주워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급교에는 양호교사를 전원 적정 배치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 III

이상 문교행정의 기본이 되는 교육법을 중심으로 하여

- 1) 국립 간호교육기관의 확충
- 2) 교육의 계속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3) 대학 편입학에 대한 정원 확충과 해당 학과의 확대
- 4) 양호교사의 배치 의무화 및 양호교사의 임무로 학교보전의 증진도모 등 4가지 방향으로 문제를 개진하였다.

각자의 법 해석에 따라 비판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정체제적인 것만을 다루어 보았다.

앞으로 산적된 간호교육에 대한 제반법적문제 해결을 위하여 계속적인 우리 자신의 노력과 참여가 요구된다.

<29페이지에서>

#### 6. 그의 최후

1857년부터 F.N은 허약한 몸으로 주로 London에서 살았다. 그녀의 시신왕례는 광범위 했으며, 해가 바뀌도록 침상에 누워 최고위층에서 부터 최하위층에 이르는 수 없이 많은 방문객을 맞았다.

F.N은 어떤 장기(organic illness)의 질환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의 허약함은 부분적으로 신경성이었으며 부분적으로 의도적이었다고 Encyclopædia Britannica는 말하고 있다.

이 확실한 전락으로 그는 쉽게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시력이 점차 약해져서 1901년에

는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

1907년 국왕은 그에게 메리트훈장(order of merit)을 수여하였다. 그 훈장을 받은 최후의 여성이었다.

F.N은 1910년 8월 13일에 90세로 일기로 서거하였다. 그의 장례를 국장으로 국가적 공훈이 있는 사람의 장자인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안치하려는 계획은 그의 생전의 유언에 따라 정중히 거절되었다. 그의 관은 여섯명의 영국군 하사에 의해 그가 어린시절을 보냈던 마을 Hampshire의 East wellow 교회뜰에 있는 가족 묘지에 안장되었다.

이로써 그의 영화롭고 뜻 깊은 일생은 막을 내렸으나 보이지 않는 그의 정신과 업적은 오늘 그를 따르는 우리들 가운데 영원히 살아 있는 것이다.